[첨부3]

투 표 용 지

안건 : 분사무소(충남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)의 해산에 따른 정관 변경

□ 변경사유 :

1. 2020년 02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설치된 분사무소(사단법인 충남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)는 현재 임직원의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.
2. 물리적 거리상 주사무소와 병행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위 분사무소를 해산하고자 합니다.

현 행 (구)	개 정 (신)
제3조(주사무소의 소재지)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3번길 37에 둔다.	**제3조(주사무소의 소재지)**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둔다.	② 법인의 분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둔다.
③ 법인의 부설 연구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.	③ (현행과 같음)

찬 성	반 대

○ 표시하세요

※ 투표결과 : 2021년 12월 31일 (금) 18:00 까지 (사)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
※ 이의신청 : 2022년 01월 07일 (금) 18:00 까지 제출

회원명(단체명) : **(인)**

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